

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The Current Picture of UK's Child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s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아동학대의 치명적 여파는 한 개인이나 가족에 계만 머물지 않는다. 무지비한 폭력성에 대한 비난과 피해 아동을 지켜내지 못한 사회 전체의 죄책감으로 확장되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회구성원 개개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강력한 정책적 대응과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기도 한다. 그런데 거기까지이다. 아동학대를 비롯해 방임이나 각종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발달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개되면, 우리사회 전체는 공분을 참지 못하고, 어린 생명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며, 이어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바로 이 지점까지의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본 글은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정비 또는 확충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사회, 국가의 보살핌과 보호가 없이는 독립적 생존이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수준의 강화 논의가 어떠

한 정치 논리와 정책적 한계로 진일보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사회와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 아동보호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 개편 노력도 실은 한 여아의 가정내 학대 사망사고에 의한 사회적 충격과 책임의식으로부터 추동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1년 11월, 코트디부아르의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한 Victori Climbié는 친인척에 맡겨져 프랑스를 거쳐 영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10살의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2000년 2월 25일 학대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당시 Victoria의 부검 보고서에서는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에 고통 받은 소녀의 주검에서 총 128개의 외부압력과 잔혹한 폭행에 의한 상처가 보고되었다. 영국사회를 더욱 경악케 한 것은 2년여 걸쳐 155명의 증인을 통해 2003년 발표된 조사보고서(The Victoria Climbié Inquiry, L. Laming, 2003, <https://www.gov.uk/>)

goverment/upload)의 발표내용이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Victoria는 사망에 이르기 이전에 지역 아동보호기관이나 병원, 경찰 등을 통해 최소 10여 차례 이상의 보호기회에 노출되었으나 어떠한 공적, 제도적인 위기개입 과정에서 파악되지 못하였고,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보장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Victoria Climbié Inquiry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참으로 절망적이었다. Victoria와 그 양육자가 접촉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아동학대 의심 소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유관 기관이나 관계자 간의 연계·협력은 커녕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되지 못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에서 Victoria 사례는 기관 업무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였고, 보호의 책임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지역사회 자원은 양적으로도 불충분 했지만, 그조차도 결코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작동하지 않았고, 유관 기관 간의 연계 채널은 부재하거나 소통하지 않았다. 관련 행정체계 간의 절차적 비연속성으로 의심사례 또는 신고사례의 접수 → 조사 → 조치 → 모니터링 → 사후관리의 매우 기본적인 보호절차가 일관되게 진행되지도 않았다. 최일선 담당기관이나 담당자의 한계뿐만이 아니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을 작동시키는 보호체계의 관리·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관운영 예산은 늘상 부족했었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녹록치 않았으며, 인력의 전문성 향상 노력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했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2. 영국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블레어 정부는 사회투자론을 정책 추진의 핵심 가치로 하고 아동의 발달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육·복지부문에 대해 집중적 투자를 실행하였다. 이에 아동보호정책을 포함하여 전향적인 아동정책의 추진 의지를 2003년 Every Child Matters 라는 정부 녹색(green paper)을 통해 천명하고, 이와 연동하여 2004년에는 아동법(Children's Act)을 개정하였다.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녹색 Every Child Matters는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비전을 설정, 실현하는데 중요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정책 실패의 원인을 a) 유관기관들 간의 조율과 연계의 부족, b) 정보공유의 실패, c) 책임 의식의 결여 그리고 d) 일선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족과 효과적인 인력 운용 및 훈련체계의 결여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대상을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각종 발달위기에 노출되어 특수교육 욕구가 있거나 행동장애, 방임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을 고려하면서 조기개입과 효과적 보호서비스의 전달 등을 위해 다음의 6가지 아동보호정책 개편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정보공유의 향상(Improving Information Sharing): 지역 당국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아동의 명부와 이들 중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접촉 이력 및 이용한 서비스 내용, 그리고 담당자 정보를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통 사정도구의 개발(Establishing a Common Assessment Framework): 모든 아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사정도구를 개발·보급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핵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공유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수집의 중복을 제거한다

3) 전담 책임인력의 임명·지정(Identifying Lead Professionals): 보호 아동이 1개 기관 이상을 접촉하게 될 경우, 개별 아동 사례에 대해 전담 책임인력을 지정한다

4) 전문 인력의 통합(Integrating Professionals): 위기가동의 선별 및 선별된 아동과 그 가족의 복잡한 서비스 욕구에 책임껏 대응하기 위해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원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통합을 추진한다

5) 서비스 접근성 제고(Co-locating Services): 학교,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 및 보육시설 내에 또는 주변에 물리적으로 위치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6) 효과적 아동보호의 보장(Ensuring Effective Child Protection): 유관기관은 모두 효과적인 아동보호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녹서가 발표된 이후 아동법(Children's Act)의 개정 등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은 2010년에 이르러 교육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의 직권으로 위기가동 보호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E. Munro 교수는 지난 10년여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가 전담 인력의 전문

성 제고에 우선 가치를 두고 아동과 그 가족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하여 영국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다음은 *The Munro Review of Child Protection: Final Report*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첫째, 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업무 전문성을 담보하는 보호체계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실제 현장전문가들이나 관리자들은 관련 법규와 사업수행 지침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건자체 또는 보호아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관료적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해 오히려 아동이나 그 가정에 대해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서비스는 실제 상소조차 할 수 없이 다차원적인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실토한다. 이에 따라 Munro Review는 우선 관련 법령의 개정, 유관기관 간의 불합리하고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대폭 단순화하여 아동중심의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간 연계·협력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아동보호 업무지침으로 활용되던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과 The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Children in Need and their Families의 내용들이 다음의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고하였다.

- 연계·협력 등 아동보호 업무의 처리 지침을 아동보호전담인력의 전문적 판단 과정과 분리
- 아동보호업무의 기본 원칙 제시
- 초기사정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심층 사정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대상 아동의 현황

〈참고〉 Every Child Matters(2003)가 제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개편 방안

- 1. 국가, 지역사회의 보호 책임과 서비스 통합을 담보하는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아동보호 관련 유관기관들 간의 경쟁 및 경계로 인해 보호서비스가 분산되지 않도록 보호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문제의 책임자를 지정하며, 여러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아동서비스국장(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 직제의 신설: 각 지방 단위에서 교육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회서비스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2) 아동 담당 지방의원(A lead council member for children)의 지정
 - 3) 아동트러스트(Children's Trust)의 설치: 장기방안으로서, 아동서비스국장의 책임과 기타 아동 보건서비스의 일부, 비행청소년 업무 등을 포괄하는 아동트러스트를 설치한다.
 - 4) 파트너십의 형성: 지방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민간 자원조직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 5) 지방아동안전보장이사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의 설치: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를 대체하는 지방아동보호이사회를 설치한다.
 - 6) 조사기능의 추가: 교육감독기관(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을 주 책임기관으로 하여 아동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가 순조로운 진행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 7) 아동책임관(Children's Commissioner) 직제의 설치: 아동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인 아동책임관 직의 설치를 추진한다. 아동책임관은 관할 지역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며, 매년 교육부 장관을 통해 의회에 보고한다.
 - 8) 숙련되고 효과적인 전문가 집단 양성: 아동보호 전문가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관 또는 소그룹체제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기관(아동센터)을 활성화하거나, 물리적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상 센터(virtual team)을 운영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동전담인력능력개발위원회(Children'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양성과 훈련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2.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주요 보편적 서비스의 예는 교육을 포함한 학교 내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 등이다. 학교는 학습과 관련하여 개인화, 개별화된 접근 전략을 채택하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19세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보건에 관한 일반적 정보 뿐 아니라 보건기관과의 접근성 및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캠페인을 수행한다.
- 3. 통합적 행정과정:**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일선 전문가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채택한다.
 - 1) 공통사정체계(Common Assessment Structure): 영국 정부는 아동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공통사정체계를 개발한다. 모든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해당 아동의 가족의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사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일선 실무자들에게 배포한다. 공통사정을 통해, 중복사정을 줄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기관들 간에 아동의 욕구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도모 수 있으며, 생산·수집된 정보의 공유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정보공유: 개정 아동법 (2004)은 아동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협력 업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지방정부는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지역 내 아동에 관한 기본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인덱스를 설치하고 표준 데이터베이스 및 지표를 개발하여 실무자들간의 정보공유를 개선하도록 한다.
- 4. 통합적 전략:** 영국 정부가 제시한 주요 통합적 전략에는 지방정부에의 조정 및 기획 등의 역할 부여, 욕구 분석 및 기획, 그리고 협력 활동 및 예산 통합 등이 포함된다.
 - 1) 지방정부의 리더십 역할: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 행정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지방정부는 위기가동의 보호를 비롯한 아동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들 간의 협조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모든 지방정부가 '아동서비스국장'을 임명하고 아동정책 상의 협력에 관한 조치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책임을 갖도록 한다.
 - 2) 욕구분석 및 기획: 한 지역 내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조사체계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정기적인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 3) 협력활동 및 예산통합: 협력활동은 욕구의 확인, 필요한 서비스의 선정, 해당 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매의 결정에 있어 관련 기관들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 통합 운영은 관련 기관들 간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견고한 행정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 보호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사정절차의 마련

- 지방 당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일정의 수립, 아동정보의 수집 및 관리, 보호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 의료기관, 학교, 경찰 및 사법당국 등 아동보호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효과성에 대한 점검
-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기본설계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배경은 물론이거니와 수급한 서비스 이력, 나아가 아동의 권리와 희망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아동과 그 가족에게 효과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에 근거하여 마련

둘째, 위기아동 보호의 조기 개입을 위한 책임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 당국은 물론 협력기관들을 통해 충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이란 지침상의 명시된 실제적 보호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아동과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보호서비스 이전 단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식적인 보호체계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개입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만, 조기개입을 위해서는 발달위기의 노출 여부를 미리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 학대나 방임 등은 물론 아동기 발달위기 요소들은 가정내 빈곤,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약물중독이나 오남용 등과 같이 은밀한 가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환경적 문제 요인 관련하여 직간접적 역할 · 기능

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과 관련 인력들이 아동보호체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 아동보호체계 상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처리 규정 및 지침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담인력의 경험과 판단으로부터 창출된 업무처리 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적 사업지침을 삭제함으로써 지방 당국의 아동보호에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과 정보를 갖춘 인력 운용에 관한 책무성과 책임 재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문 인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을 주장하면서, 아동보호 전담인력이나 사회복지 인력의 양성과정에서 아동중심(child-centered)의 지식과 관련 기술을 교육시키는 근본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총 150여 쪽에 이르는 Munro Review는 보다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최우선 도전과제는 위기의 아동과 그 가족을 정확하게 파악 · 이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최상의 상태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전담 인력들 간의 연계 · 협력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보호 절차 상의 책무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분절적 기능 수행 실태에 관심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서비스 제공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중앙-지방정부, 그리고 유관기관의 성과관리 체계의 정착을 강조한 바 있다.

3. 영국 아동안전보장 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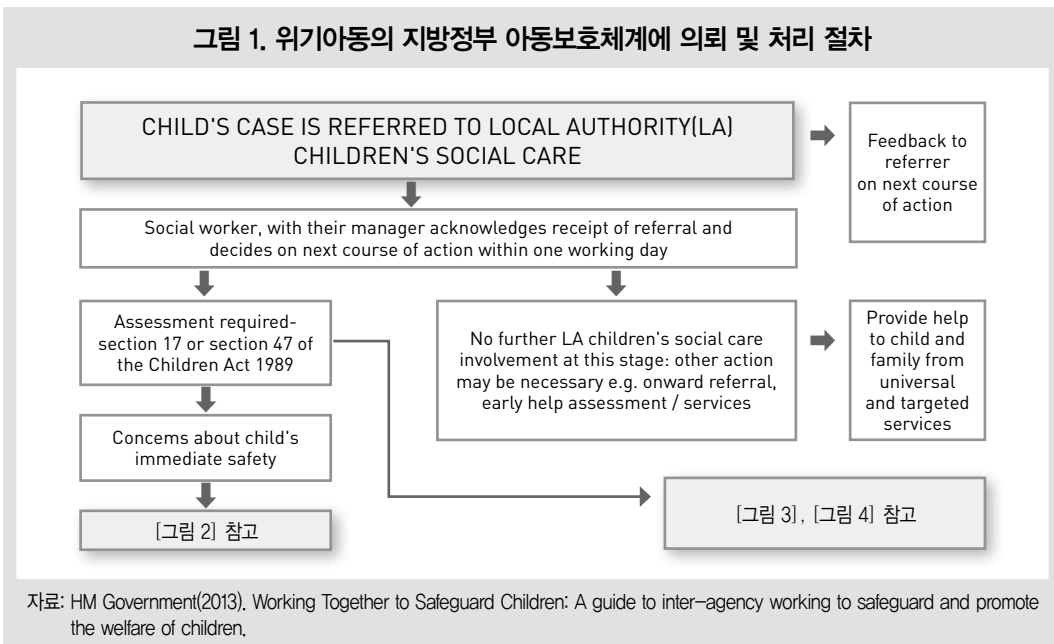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발달위기의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아동 안전보장(Safeguarding Children)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아동과 가족이 접촉하는 모든 창구는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명시한 아동보호업무 지침 개정안(2013)에서 보호서비스의 제공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으로 명명된 개정 업무지침에서 아동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이라 함은 부적절한 양육으로 부터의 보호, 건강과 발달의 장애요인의 사전적 예방, 안전하고 효

과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의 보장, 그리고 모든 아동이 최상의 발달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함한다. 2011~12년 중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60십여 만명의 아동이 지역당국의 아동보호체계에 연계되었는데, 아동 보호 전담인력이 개별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때 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초기 사정(assessment)과 정보공유, 보호 조치의 일정 수립 및 개별 사례관리 과정에 대해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협력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아동 안전보장의 역할은 관계자 모두의 책임인 동시에 각

그림 1. 위기아동의 지방정부 아동보호체계에 의뢰 및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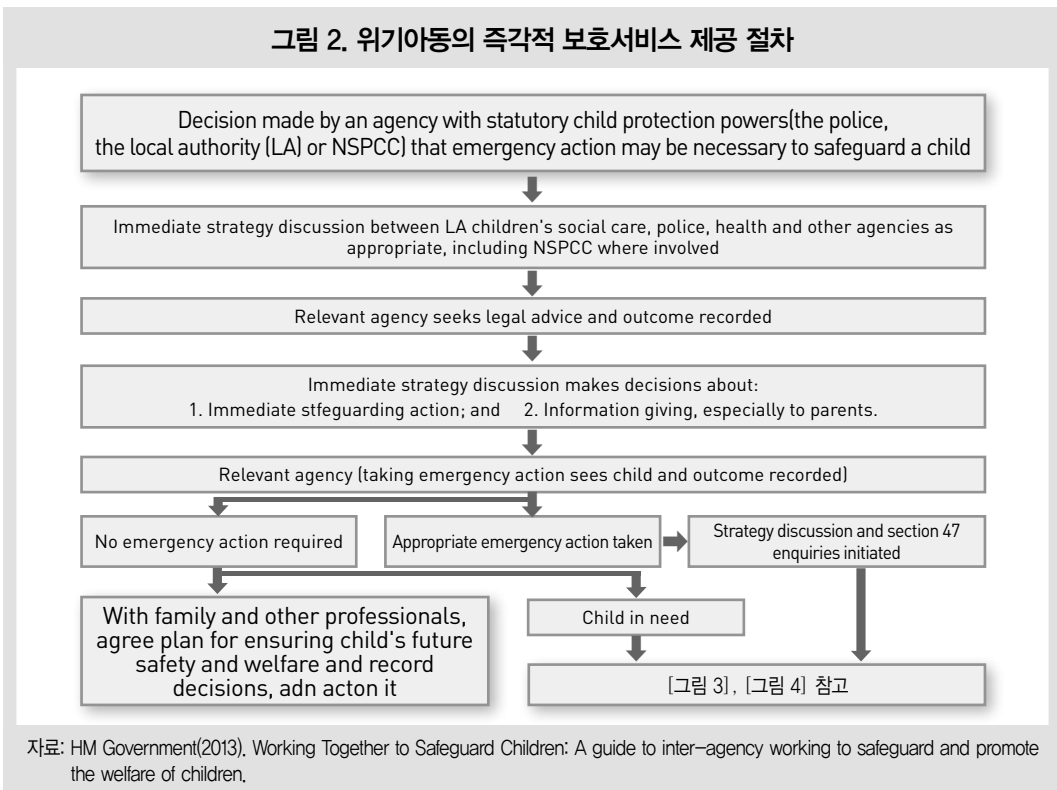


각의 고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침 규정이 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당국의 기획·조정력이 관건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아동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내는 노력, 아동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업무 지침은 유관기관의 보호책임을 명시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에는 학교, 보육시설, 의료기관, 경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주거전담 부서, 교도행정시설, 교통안전국, 아동가족법원, 민간기관 및 자원봉사조직, 종교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지역아동안전보장이사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의 운영과 관련된

지침과 고도 위기사례를 통해 아동보호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과 [그림 2]의 서비스 흐름도에 따르면 위기아동이 영국 아동보호서비스를 주관하는 지역당국에 신고·의뢰되었을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업무를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즉각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작동되지는 않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의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조기개입과 사전 사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한편 즉각적인 보호절차가 전개되는 경우, 지역당국과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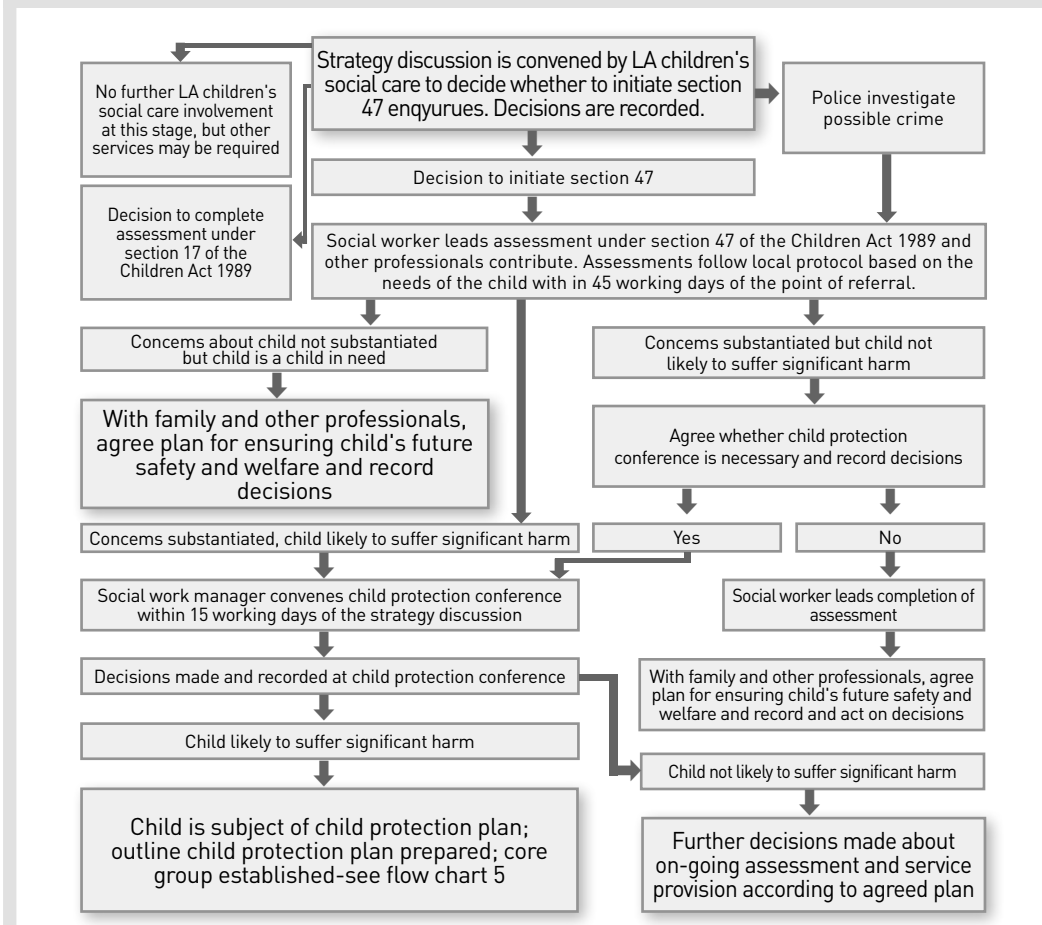
그림 2. 위기아동의 즉각적 보호서비스 제공 절차



관이 참여하는 보호전략 논의 절차를 걸쳐, 즉각적 조치 및 부모에게 보호조치 관련 결정사항 등을 전달한다. 해당기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보호 상태 및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즉각적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담당자, 그리고 양육자가 향후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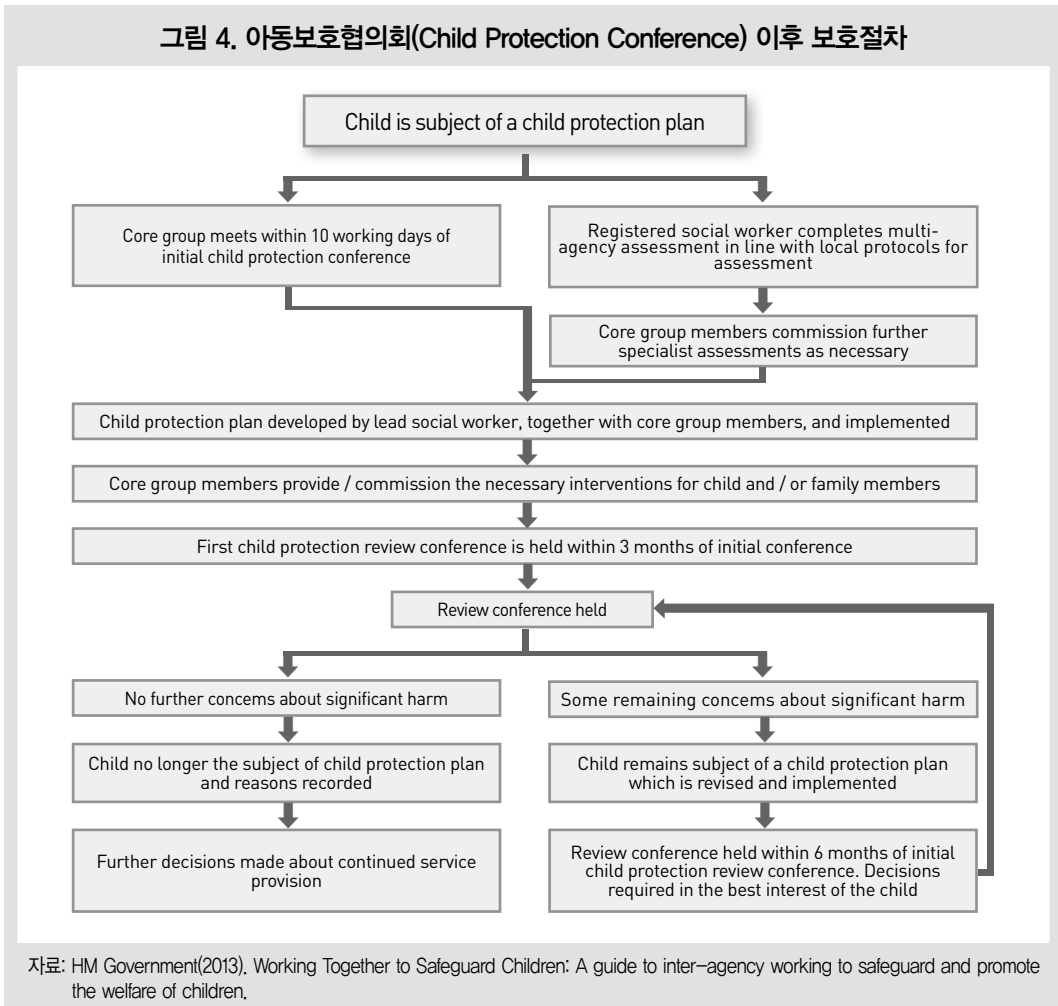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응급 보호조치가 아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의 사정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진단하고 45일의 경과기간 동안 가족 지원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후 아동보호 계획이나 아동상태를 확인하여 더 이상의 법정서비스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

그림 3. 아동보호 전략논의(Stratgy Discussion) 이후의 보호 절차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그림 4. 아동보호협의회(Child Protection Conference) 이후 보호절차



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종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호전략 논의과정에서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나 일반 보호절차를 진행하던 중에도 치명적 위험을 발견한 경우,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주도 하에 아동의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아동 보호협의회(Child Protection Conference)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동보호협의회는 보호 전략논의(Strategy Discussion) 이후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여 아동보호 절차에 대한 판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아동보호협의회에서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보호계획 및 절차가 결정되고 전담보호조직을 선정하게 된다. 전담보호조직은 최초 협의회 개최 이후 10일 이내에 결성되어야 하며, 이들을 통해 보

호절차를 진행하고 3개월 이후 협의회를 재 개최하여 해당사례의 위기정도를 판정한다. 재판정 과정에서 아동발달의 위기 요인이 제거되지 못한 사례의 경우 다시 3개월 이후 재검토 된다(즉, 최초 아동보호협의회 개최 이후 6개월 이내, [그림 3], [그림 4] 참고).

4. 나가며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가 아동안정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로의 확장과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정부보고서를 살펴보면 사뭇 그 방대한 검토와 정책방안에 대한 고민 수준에 압도되게 된다. 그리고 Victoria의 불행하고도 짧은 생애를 돌이키면서 더 이상 유사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담긴 듯하여 정책성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아직 사업지침 변화 이후 아동보호정책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영국의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국의 선형 경험에서 분명하게 전달되는 메시지 중의 하나는 위기의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성장기를 제시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투자라는 점이다. 아동인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정작 현재 우리는 그 아동에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가? 투자 이전에 그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발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따라서 영국이 그러했듯, 한국사회도 유기·방임, 학대, 빈곤 등 발달위기의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고, 발달위기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여 발달 촉진 요인을 확산시키기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역할이 시급하다.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발달 상의 손상·장애를 예방하면서 개별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 발현할 수 있도록 아동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한국의 아동보호체계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기 유형이나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보호업무의 주관 부처나 정책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보호 채널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전담인력과 유관 기관의 헌신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 보호업무에 관한 일관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서비스 연계와 파편적·분절적 서비스, 사후 관리의 부재 등으로 아동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영국에서는 위기 아동 개인과 가족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됨으로써의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성이 배가될 것을 기대하였다. 한국도 아직 위기 아동 보호에 관한 통합 정보관리 체계(DB)가 구축되지 못해 위기아동 또는 위기의심 사례에 대해 최초 보호체계 유입에서부터 서비스 이용 및 원가정 복귀까지의 전반에 걸친 정보관리가 취약하고 정보시스템이 비효율적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Munro Review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전담

인력의 전문성 관련해서도 우리의 한계는 드러나고 있다. 읍면동·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 업무 담당인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아동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 잦은 인사이동으로 보호서비스의 전문성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고,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 역량에 오롯이 맡겨져 있다니 말이다. 위기의 아동을 안전하지 못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지만, 원가정 보호 및 지지체계가 미약하고 가정분리 후에도 원가정 복귀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보호 대상 아동의 앞날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듯하여 슬프기까지 한 현실이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듬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까? 다양한 접근과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저

자는 우선 위기아동 보호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적책임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고유의 자원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내 아동 개개인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지역단위 보호체계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즉 지방자치단체 내의 아동보호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이 주도하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특히 학교-가정-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현행의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기초·광역 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책임의식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